

※ 신 · 구조문대비표

1] 인사규정 일부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임용의 원칙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63조의2(징계사유 소멸시효)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소멸된다. 다만,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 유용 · <u>횡령</u>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</p>	<p>제12조(임용의 원칙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신규 채용직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·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, 그 내부 감사인은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지정한 감사 또는 감사가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12조의2(임직원 친인척 공개) 원장은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배우자</u> <u>2.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</u></p> <p>제63조의2(징계사유 소멸시효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횡령, 채용비리</u> ----- -----.</p> <p><u>제63조의3(채용비위 처리) ① 원장은</u></p>

	<p><u>비위 채용이 확인된 경우 즉시 비위 채용자의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비위 채용자는 적발된 날부터 5년까지 진흥원 채용 시험의 응시를 제한한다.</u></p> <p><u>③ 원장은 부정합격자가 합격을 즉시 취소해야 하며,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(방법·절차)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
--	---

② 연구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업무 관장) 수탁 연구사업의 관리 주관부서는 <u>기획연구부</u> 로 하고, 예산집행 부서는 <u>총무부</u> 로 한다.	제32조(업무 관장) ----- ----- <u>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가 관장하고</u> ----- 관장한다.
제37조(수탁 연구사업의 결과보고) ① 수탁 연구사업의 종결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서 정한 지침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, 연구사업 책임자는 그 결과를 <u>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원장</u>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고와 함께 수탁 연구사업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.	제37조(수탁 연구사업의 결과보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원장</u> ----- ----- -----.

② 수탁 연구사업의 종결은 위탁 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수탁 연구사업 결과보고서([별지 제 9호])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종결된다.

② -----

----- 작성하여 -----

-----.

3 학술행사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학술행사의 종류) 학술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6조(학술행사 심의) ① (생략)</p> <p>② 학술행사의 운영과 관련된 수당 및 원고료의 지급액 등은 <u>따로</u></p>	<p>제3조(학술행사의 종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학술진흥포럼 : 당면한 학술진흥의 과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처방 모색을 위해 각계 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럼형태의 학술행사</u></p> <p>6. <u>원내세미나 : 원내 연구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학문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전문지식의 심화를 위한 학술활동</u></p> <p>7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6조(학술행사 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공</u></p>

정한다.

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. 다만,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다.